

한국 간호원의 윤리강령 해설

이화여대 간호대학장
1971년도 윤리위원장

이 영 복



I. 職業倫理에 대하여.

윤리의 定義를 쉽게 말하면 “옳은 마음가짐과 옳은 행위의 표준” 혹은 “사람이 그 사회적관계 즉 인간관계에 있어서 지켜야할 道理(길과 이치)를 다스리는 표준” 또는 우리의 마음, 태도, 행위에 있어서 그 正과 邪, 善과 惡, 義와 不義를 판가를 하려는 내부적인 노력” 등으로 표현한다.

우리가 倫理라고 번역하는 영어의 ethics는 희랍語의 ythos(品性)라는 말과 ethos(風習)라는 말에서 온 것이고 우리가 道德이라고 번역하는 영어의 moral은 라틴語의 mores(品性, 또는 風習)라는 語源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윤리와 도덕은 사실 같은 뜻인데 윤리는 좀더 주관적인 입장에서 많이 쓰고 도덕은 윤리가 객관화되고 일반화된 상태에서 더 많이 쓴다.

우리는 한 人間으로서, 市民으로서 혹은 社會人 또는 家庭人으로서의 倫理를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 종교적 훈탄, 독서, 경험등 여러가지 방법과 길을 통하여 배우고 깨달고 또 준수하면서 살고 있다.

그런데 職業人에게는 그 직업 나름대로 지켜야 할 윤리가 따로 있다. 특히 직업의 궁극적인 목적을 인류 복지에 두고 높은 수준의 교육적 배경과 업무의 직업적인 대상을 인간과 그 생명에 두고있는 전문직업인 (professional person)에게는 고도의 직업윤리가 요청되고 있다.

직업윤리를 구성하는 要因으로 다음 네가지를 들 수 있다.

1. 歷史的 背景 (Historical background)
2. 社會相 (Social pattern)
3. 專門職自體의 성격 (Characteristics of profession)

한국 간호원의 윤리강령

—대한간호협회 제39회 총회에서 윤리 위원회 제청으로 채택

간호원의 기본책임은 그 보호아래 맡겨진 각사람의 생명을 보전하고 고통을 덜어주며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도록 도와주는 일이다.

전문간호직을 통하여 인류애를 실천하고 봉사하는 간호원은 양심적이고 진실한 행동으로 직업윤리를 앙양하

4. 個人 (Individual)

윤리관 眞理와는 달라서 時代性과 社會性의 영향을 받음으로 時代性의 영향이 歷史的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社會性의 영향이 社會相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직업적 특성에 있어서 우리가 속해 있는 專門看護職은 매우 높은 倫理觀을 부르고 있는 직업 중의 하나이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간호의 대상자가 生理的으로 心理的으로 不健康한 사람들과고, 간호원은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일을 하며, 사람의 生涯 가운데 가장 엄숙하고 극적인 순간 예를들면 出産과 出生, 정신적고민과 육체적고통, 死亡, 意識不明, 蘇生등을 겪는 사람들을 위하여 도와주며 지켜주는 일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이다.

간호원이 간호직에 대한 윤리를 잘 알고 준수하면 던저는 그 自身이 다음 몇가지 면에서 도움을 받으며 이러한 도움은 결과적으로 被看護者에게는 有益을 주며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까지도 信賴와 기쁨을 준다.

1. 직무와 관련된 자기자신을 더 잘 알게 된다.
2. 간호원은 늘 당면한 문제가운데서 신속하게 판단해야 되는데 지혜로운 판단으로 이끌어 준다.
3. 安全하고 善하고 合理的인 행동의 방향을.

끊임없이 지시해 준다.

4. 직업을 통한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해주며 어려움 중에서도 감사와 용기를 얻게 된다, 이러한 체험은 높은 윤리관 없이는 소유하기 어렵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때 간호원에게 윤리강령이 필요한 것은 요사이 時代思潮가 퇴폐했다던가 분위기가 문란해 졌다든가 하는 것이 큰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니며 간호업무자체의 특성이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간호원 이전에 한 人間으로서의 윤리관이 투철하며 社會正義에 예민한 사람일수록 간호직에는 적격자라고 보겠다.

倫理강령이 法條文은 아니다. 法 이전이며 法과는 거리가 멀면서도 철저한 간호윤리강령의 준수는 違法行爲를 스스로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하다.

어떤사람은 “.....그러한 일 하지말라는 法 어디 있느냐?”고 곧잘 말하는데 세상에는 法에는 없지만 하지말아야 되는 일이 너무도 많다. 대부분의 일들은 法이전에 常識과 慣習과 禮法이 있고 또 그보다도 이전에 倫理와 道義와 良心이 판가름하기 마련이다. 대부분의 경우 法이란 最低에 기준을 두고 타인 혹은 공중에게 구체적인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고 倫理는 最高에 기준을 두고 남을 더욱 높이고 모두를 이롭게 하는데 목표를 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 정의 실현을 추구한다.

간호원은 면허소지자로서의 자격과 권리에 따르는 도의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다음의 윤리강령을 존중하고 준수한다.

그외에 세부적인 윤리문제에 관해서는 각자의 올바른 철학과 직업적 양식으로서 결정한다.

1. 간호원은 국제간호윤리 규약과 제네바 협정에서 밝혀진 적십자 원칙을 따른다.
2. 간호원은 민주국민의 정신으로 지역사회인의 건강을 위하여 일하며 국가비상시에 대비하는 자세를 갖춘다.
3. 간호원은 받은바 간호교육이 인류복지에 공헌할 것을 확신하며 계속적인 수련으로 자질향상에 노력한다.

II. 윤리강령 설명

본강령은 서문적인 간호원의 기본적이고 전체적인 책임의 설명과 15개 조항의 구체적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문의 첫 구절은 간호원 개인의 피간호자 개인개인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의 단계를 말한 것이다. 둘째 구절은 전문간호직에 속한 자로서의 인류애의 실천과 사회정의의 구현을 천명한 것이다. 셋째 구절은 좀더 구체적으로 法的義務에 앞서는 道義的 責任을 다하기 위하여 윤리강령 준수를 다짐하는 것이다.

1번 : 대한간호협회는 1949년이래 I.C.N.의 正會員國임으로 1953년 I.C.N. 총회에서 채택한 International Code of Nursing Ethics를 준수할 책임이 있다. 제네바協定이란 1864년 赤十字社創建 당시 협정은 물론 1949년 체결된 제네바협정을 의미한다. 즉 간호행위의 中立性和 平和의人道主義 실천이다.

2번 : 우리國家에 대한 책임으로 평시에는 지역사회인의 건강을 위해 일하며 비상시에는 국가의 부름으로 국민과 국토의 방위까지도 책임이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3번 : 自身이 받은 전문간호교육에 대한 스스로의 認定과 自尊을 뜻한다.

4번 : Team Function으로 이뤄지는 현대 의료

보건사업의 구조 속에서 또는 국제적으로 떨어져 나가는 간호활동 범위 내에서의 나의 位置와 단체적인 책임의 증대를 논한 것이다.

5번 : 간호대상자의 무차별성과 그들에 대한 公正性 또는 條件의 초월을 말한다.

6번 : 피간호자는 알게 모르게 자기들의 비밀을 털어놓게 되는데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누설하지 않는다.

7번 : 평상시에 감독이나 평가를 받든지 아니 받든지 늘 최고수준의 지식과 기술을 적용한다. 그러나 비윤리적인 행위의 참여는 거절한다. 단타인의 비윤리적인 행위의 결과로 생겨진 환자는 간호해 준다.

8번 : 專門의資格으로 制度化된 현대사회에서 타분야의 免許行爲나 영역을 침범함은 不正行爲에 속한다.

9번 : 醫師의 공식적인 지시는 즉 處方을 말한다. 간호원의 다양한 기능중 의사의 진료를 보조하는 기능은 그 일부분인데 이는 처방을 바로 이해하고 정확하게 실시하는 것 뿐이다. 진료조만이 간호원의 기능도 아니며 의사와 함께 실시하는 것만이 정당한 실시 방법도 아니다. 잘못된 처방이라고 생각될 때는 다시 확인한다.

10번 : 간호원은 모든 면에서 환자와 접근되어 있으며 의사를 위시한 타 부서 요원들과 환자

4. 간호원은 의료 보건의료의 요원으로 질병의 예방과 퇴치에 힘쓰며 개인, 가정, 국가 및 국제사회의 발전에 위하여 활동한다.
5. 간호원은 환자의 인종, 성별, 사상, 종교, 빈부 또는 사회적 지위를 초월하여 간호한다.
6. 간호원은 환자와 그 가족의 인격을 존중하여 성실하게 대하며 직업상 알게된 그들의 비밀을 굳게 지킨다.
7. 간호원은 간호행위 실시에 있어서 높은 수준의 지식과 기술을 적용하며 비 윤리적인 행위에는 참여를 부린다.
8. 간호원은 업무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행하므로 다른 전문직의 영역을 침해하지 않는다.
9. 간호원은 의사의 처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바로 행하며 처방이 잘못된 줄 알고는 실시하지 않는다.

사이에서 또한 병원과 대중사이에서 까지도 매개체와 대변자의 역할을 하게 되므로 기록과 보고의 정직성과 정확성은 매우 중요하다.

11번 : 업무를 중시하여 맺어지는 모든 사람들과의 직업적 관계는 원만해야 되지만 지나친 친교와 무례는 비윤리적 기풍을 조성하기 쉬운 것으로 삼가야 된다.

12번 : 공·사 구별은 직업적 태도와 위신의 기본이 된다. 이는 물질적 문제에 국한되지 않으며 人力과 時間 또는 關心善에 까지도 적용되는 말이다.

13번 : 就業이란 하나의 계약이다. 서약서를 쓰지 않아도 默契가 성립됨으로 약속한 근무기간을 엄수한다. 근무지를 너무 자주 옮기는 것은 전전한 직업인의 이미지는 되지 못한다. 간호원은 自願奉仕隊 등과는 성격이 다른 전문직종인인 고로 계약된 보수를 받을 권한이 있다. 그러나 정당한 보수외에 어떠한 조건을 의미하는 私的인 팁이나 뇌물은 받지 않는다.

14번 : 윤리문제와 관련된 직업인의 私生活문

제는 늘 논란의 대상이 된다. 전문직업이란 平生 課業(Life career인 만큼 사생활까지도 직업윤리에 확실히 포함된다. 사생활이란 외모와 차림차림, 交友관계, 애정문제, 가정생활, 금전문제, 사상문제, 신앙생활태도등 일체로서 배사에 敎養과 節度와 自制를 부르고 있다.

15번 : 전문직의 중요한 基準이 되는 自治活動은 간호원의 권리요 책임이다. 회원으로서의 출석, 회비납부, 활동참여는 물론 회의 명예와 발전을 늘 염두에 두는 마음가짐이겠다. 즉 會의 발전은 자신의 직업적 향상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결론 : 가장 중요한 것은 윤리강령이 강령으로 존재하고 위엄을 발하는데 끝난다면 무가치한 것이고 이를 실천하는 것만이 간호원과 간호사업을 드높이며 국민의 보건을 위한 것이다.

한편 우리 自身들이 이러한 실천을 할때 社會 大衆이 우리를 애끼고 이해할 것이며 또한 우리들이 원하는, 또한 필요한 모든 것을 떳떳하게 요구하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10. 간호원은 관찰한 증상과 실시한 내용을 사실 그대로 정직하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보고한다.
11. 간호원은 업무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윤리적인 기풍을 조성한다.
12. 간호원은 공 사를 확실히 구별하며 공적인 시간과 물자를 사사롭게 쓰지 않는다.
13. 간호원은 약속한 근무기간을 엄수하며 정당한 보수만을 받는다.
14. 간호원은 사생활을 건전하게 영위하며 외모와 행동을 단정히 전문직업인으로서의 긍지를 높인다.
15. 간호원은 자치활동에 참여하여 각자의 직업적발전과 권익확장을 위해 힘쓰며 간호사업 수훈향상에 이바지 한다.

비고 : 국제간호윤리규약(International Code of Nursing Ethics)은 1953년 I. C. N. 총회에서 채택되고 1965년에 수정되다.